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 설명요구권 신설 등〉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98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 설명요구권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	2
2. 이용자 보호 업무(안 제35조의2 신설)	11
3.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1까지 신설)	1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회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6.

다. 회 부 일 : 2025.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 피해구제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학습데이터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 원인을 파악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설명요구권과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별도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1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 설명요구권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이용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결과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인공지능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가 요구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3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결과 도출 기준과 절차, 고영향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요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u><신설></u>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u>제34조의2(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요구권) ① 이용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u>

현행	개정안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u>용한 제품·서비스의 결과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설명을 요구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가 요구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u> <u>③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결과 도출 기준과 절차, 고영향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요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설명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고영향 인공지능의 결과 도출 기준·절차 및 데이터 활용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3조(과태료) ① -----

현행	개정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u> <u>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u> <u>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¹⁾하고 있음.
- 고영향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은 ① 에너지의 공급, ② 먹는물의 생산 공정, ③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④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⑤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⑥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의 분석·활용, ⑦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단 또는 평가, ⑧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의사결정, ⑩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등임.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확산은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만큼 개인정보의 오용, 데이터 제공의 편향성 등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피해 또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함.

-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별도로 정의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사전 검·인증(제30조제3항),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5조) 등 일정한 규제 장치를 마련²⁾하고 있음.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적용 범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만으로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설명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업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개별적인 이용자의 설명요구와 별개로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의 결과 도출 기준과 절차, 고영향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요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³⁾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와 이에 활용된 기준, 데이터 개요 등에 대한 설명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이미 부과하고 있음.
- 그 외에도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에서 투명성 확보 의무나 사전 검·인증 노력 의무 등 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입법정책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규제 강도를 정한 것임.
- 그런데, 고영향 인공지능의 요건인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보다 설명요구권의 적용 대상인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완화된 요건으로 보이고,

‘중대한 영향’이라는 표현도 추상적으로 해석되어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실상 모든 고영향 인공지능이 설명요구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방안의 수립·시행

- 이처럼,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요구권과 일반적인 공개 의무가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 아직 인공지능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규제 영향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 둘째,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이용 결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현장에서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비롯하여 많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는 스스로 학습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사업자라고 하여도 기본적인 학습 과정 외에 모든 개별적인 이용 결과에 대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의 결과 도출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요 등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성능과 경쟁력, 즉 상품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적 노하우나 사업 전략이 반영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제3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인공지능사업자의 민감한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는 공감하나, 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는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설명방안 수립·시행 의무를 이미 부과하고 있어 개정안의 개별적 설명요구권 및 공개 의무가 현행법상 의무와 중복·상충될 우려가 있고,

개별 이용자의 설명요구 대응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며, 인공지능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기술적으로 제한적인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중 설명방안 수립·시행 책무를 사업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시행령·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등 관계 규정⁴⁾과 중복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보 보호법상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용자뿐만 아니라 영향받는 자에 대해서도 설명요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요구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용자 보호 업무(안 제35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함(안 제35조의2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u><신 설></u>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u>제35조의2(이용자 보호) ① 인공</u> <u>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제품 또</u> <u>는 인공지능서비스에 관하여</u> <u>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u> <u>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u> <u>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u> <u>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u> <u>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u>

현행	개정안
제43조(과태료) <신설>	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기준·절차, 평가 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u>아니한 자</u>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불만을 즉시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이용자 보호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이용자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안 제43조제2항제1호는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을 제외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의 문언상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을

제외할 경우 정당한 의견·불만 즉시 처리의무가 남게 됨.

- 그런데, 의견·불만 처리의무의 경우 ‘정당한 불만·민원’, ‘즉시’의 의미나 범위가 추상적이어서 즉시 처리의무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고 불만·의견 즉시 처리 의무 외에 추가적인 보호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여 어떠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의무의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용자 보호 의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존 이용자·소비자 보호 법령과 규제가 중복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 보호 평가 대상·기준·절차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포괄적 평가 권한 부여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 조치보다는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등 관계 규정⁵⁾과 중복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 보호법상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용자뿐만 아니라 영향받는 자에 대해서도 설명요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5)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1까지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위원회의 구성·임기·정족수 및 조정부 설치(안 제36조의2)
- 위원회의 신분보장 및 제척·기피·회피(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 분쟁조정의 신청, 처리기간 및 자료의 요청(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7)
- 분쟁조정의 합의권고, 조정절차, 거부·중지 및 절차(안 제36조의8부터 제36조의11)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u><신설></u> <u><신설></u>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장의2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제36조의2(인공지능 분쟁조정위 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공지 능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 여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

현행	개정안
	<u>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u> <u>1. 인공지능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u> <u>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u> <u>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u> <u>4.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민사회</u>

현행	개정안
	<u>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u> <u>5. 인공지능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u> <u>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한다.</u> <u>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u> <u>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u> <u>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위원 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3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5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

현행	개정안
<u><신 설></u>	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36조의5(조정 신청 등) ① 인 공지능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따라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36조의6(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

현행	개정안
<u><신 설></u>	<u>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u> <u>제36조의9(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u> <u>1.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u> <u>2.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u> <u>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u> <u>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u>

현행	개정안
	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사법적인 절차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담당하는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하며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실체규정을 두려는 것임.
-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모두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분쟁의 대상은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음.

- 참고로, 동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구조와 내용이 유사한데 개인정보 관련 분쟁보다 인공지능 관련 분쟁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분쟁 조정 대상의 구체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히,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이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산업재산권·저작권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개별법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그 대상이 중복될 경우 분쟁 조정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음.

분쟁조정기구 입법례

조정 대상	근거 법률	조정 기구
개인정보 관련 분쟁	「개인정보 보호법」 제7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비자-사업자 분쟁	「소비자기본법」 제8장 제3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 등 관련 분쟁	「발명진흥법」 제5장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 관련 분쟁	「저작권법」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관련 분쟁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6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따라서,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은 해당하는 개별법상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거나 개별법상 분쟁조정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 방송통신 관련 분쟁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명시적으로 제외⁶⁾하고 있음.

- 추가로, 위원 구성의 경우 경력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추천단체인 시민사회단체, 사업자단체의 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하위법령으로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소비자·산업재산권·콘텐츠·저작권 등 관련 분쟁은 기존 제도가 있어 별도 조정제도 신설 시 관할 중복 및 혼선이 우려되므로 기존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공지능 관련 분쟁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제도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도록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에서 제외하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부), 콘텐츠 관련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도록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에서 제외하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분쟁은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관련 분쟁 조정 기능을 기존에 설치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지식재산처는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등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도록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에서 제외하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